

출처의 명기(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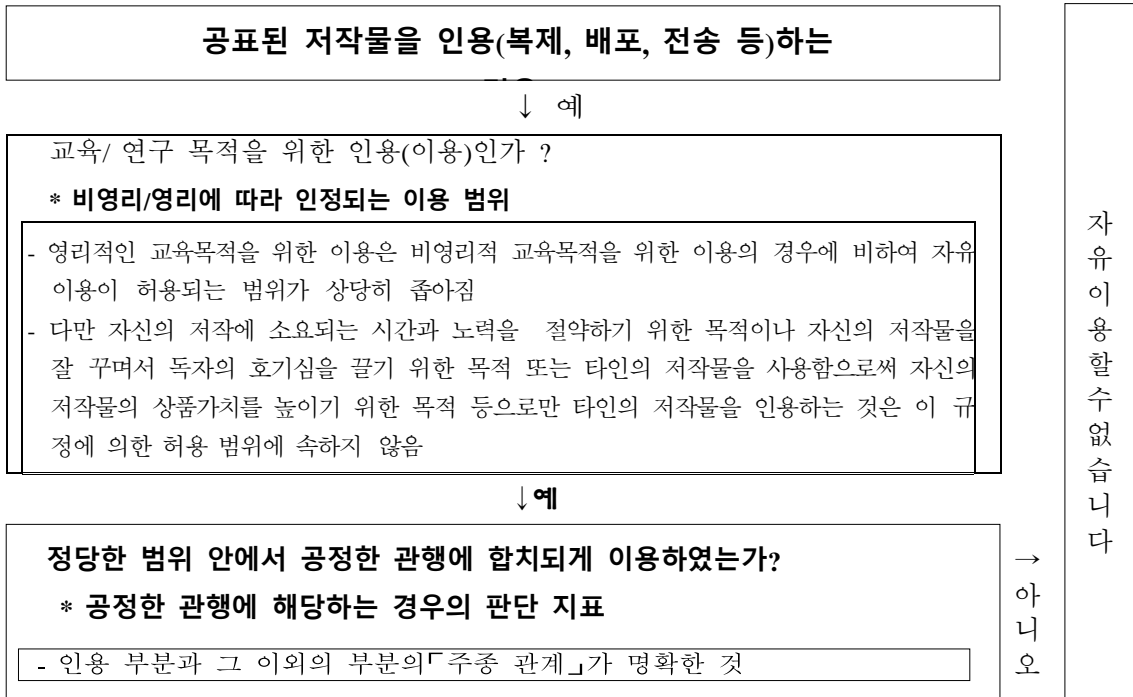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작물 등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리제한규정으로 불리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괄호 등에 의해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될 것
예 : 인용의 부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는가(“ …… “, 들여쓰기, 폰트를 변경 등)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예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출처 표시 예 :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예(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허락을 얻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주세요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말과 글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말과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이용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남의 말과 글 또는 견해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하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밝히고 인용부호나 인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a.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인용을 하는 필연성이 있을 것)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네 가지의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음.

-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c.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인용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한 것
 - 괄호 등에 의해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될 것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d 출처를 명시할 것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 야 할 것



[그림 3.2] 공표된 저작물 인용 시 체크 사항

나. 저작권법 제35조의 3 공정한 이용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2012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합의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 예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 범위 결정?
*** 비영리/영리, 변용적(생산적)이용 등에 따라 인정되는 이용 범위**

-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 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공정이용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음
 (이 경우, 교육 또는 연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넓어짐)
- 그리고, 그 이용이 생산적 이용(새로운 표현, 의미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높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인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수권기 안함

↓ 예

자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량/사용량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범위 결정?

*** 질적/양적 판단 지표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음**

- 미국의 공정이용 분량적 제한 기준 :
- 한 해학기 동안 한 저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적 제한(학생과 교사들에게 적용됨)
 - 영화, 비디오, TV, DVD (영상 미디어) - 10% 또는 3분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 산문, 희곡 (텍스트) - 10% 또는 1000자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인 한 사람 당 3개의 시 또는 여러 저자의 시선 집 중 5개 시 이하 — 시의 경우 250자 제한도 있음
 - 가사, 뮤직 비디오, 음악 녹음 — 한 작품에서 10% 그리고 30초 미만 — 뮤직 비디오의 오디오 파일도 포함 — 메인 멜로디는 유지되어야 함.
 -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 한 멀티미디어에 포함된 저작자의 저작물 중 5편을 넘지 않아야 함 — 10% 또는 한 소스(책, 웹페이지, CD)에서 15편의 이미지를 넘지 않아야 함.
 - 숫자 데이터(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차트형태의 통계 자료) - 10% 또는 2500 피드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아
니
오**

저작물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
- 저작물의 이용 목적, 이용된 내용과 분량, 이용된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허락을 받아주세요

↓ 예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 출처 표시 예 :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 예(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허락을 얻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5 KERIS 이슈리포트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①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여부
- ② 이용이 사적(私的)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③ 이용이 '생산적 이용'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④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⑤ 이용이 '부수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⑥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이 정당한지 여부 등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성질이 창작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공정이용을 허용하는가의 문제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 전체에서 보았을 경우의 이용되는 양

[참고] 미국의 멀티미디어 공정이용 기준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ultimedia, 1997)

- (1)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
- (2) 어문 저작물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000단 어 중 짧은 것. 시의 경우 1편의 시의 길이가 250어 이하의 경우는 전부 이용, 그러나 시인 1명에 대해 3개의 시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 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까지. 250단어 이상의 시의 경우, 하나 의 시로부터 250단어까지의 사용이 가능. 다만, 1명의 시인에 대해 3개의 시의 인용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의 인용까지 가능.
- (3) 음악, 가사, 음악 비디오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까지. 다만, 하나의 음악 저작물로부터 30초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4)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한다.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것.
- (5) 숫자 · 통계적 데이터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2,500페이지(세 매스)를 적은 것.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음